



위변조 방지용 바코드입니다.



음성출력용바코드

# 서울중앙지방법원

## 제 50 민사부

### 결 정

사 건 2022카합33 투자계약등체결금지가처분

채 권 자

1. 강 [redacted]

[redacted]

2. [redacted] 문카라([redacted] Munkara)

[redacted]

[redacted]

[redacted]

3. [redacted] 바부이([redacted] Babui)

[redacted]

[redacted]

[redacted])

4. [redacted] 퀴([redacted] Quall)

[redacted]

[redact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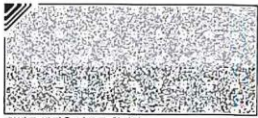
채권자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림

담당변호사 한정림, 김도현

채 무 자

1. 한국무역보험공사

※ 문서 좌측 상단의 바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홈페이지 및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변조 방지용 바코드입니다.



www.scourt.go.kr



음성출력용바코드

서울 종로구 종로 14 (서린동, 한국무역보험공사빌딩)

대표자 이인호

## 2. 한국수출입은행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38 (여의도동, 한국수출입은행빌딩)

대표자 은행장 방문규

채무자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진광철, 조영주, 송은희, 이문원

채무자 보조참가인 에스케이이엔에스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종로 26(서린동, SK서린동빌딩)

대표이사 추형욱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병훈, 곽윤경, 서동철, 황광연, 이효은

## 주 문

1.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 신청 취지

채무자 한국무역보험공사는 별지1 기재 행위를, 채무자 한국수출입은행은 별지2 기재 행위를 각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이 유

※ 문서 좌측 상단의 바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홈페이지 및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변조 방지용 바코드입니다.



음성출력용바코드

## 1. 신청이유의 요지

가. 채권자 ████████ 문카라, ████████ 바부이, ████████ 킬은 호주 국민으로서 채무자 보조참가인 에스케이이엔에스 주식회사(이하 '에스케이이엔에스'라 한다)가 계획 중인 '바로스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상 개발 예정지 부근인 노던 준주에 거주하고 있다. 채권자 강████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사업은 호주 다윈 연안에서 300km 떨어진 바로사-칼디타(Barossa-Caldita) 가스전 중 바로사 가스전을 개발하여 2025년 1분기 경부터 LNG 상업생산을 개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바, 채무자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위 사업을 위해 대출 및 무역보험 체결에 대한 의향서를 발급하고, 채무자 한국수출입은행도 대출 의향서를 발급하는 등 이 사건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다. 그런데 이 사건 사업은 가스의 채굴 및 처리 과정, 액화, 운송, 최종 연소 과정에서 다량의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등 대기오염을 일으켜 생명과 건강의 피해가 우려된다. 그리고 이 사건 사업은 원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호주와 인도네시아 사이의 해양 경계에 위치하는 등으로 성공 가능성이 매우 낮다. 나아가 이러한 불확실성이나 비경제성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사업에 금융지원을 하는 것은 재무적 타당성도 결여되어 있다.

라. 이에 채권자 ████████ 문카라, ████████ 바부이, ████████ 킬은 헌법상 환경권에 기한 건강권 및 건강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권리, 소유권 또는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채권자 강████은 국가재정법 제100조 제1항에 기한 기금집행 및 재정지원을 받는 자에 대한 시정요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 문서 좌측 상단의 바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홈페이지 및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 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변조 방지용 바코드입니다.



www.scourt.go.kr  
음성출력용바코드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의 금지를 구한다.

## 2. 당사자 적격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채무자들은 채권자 강[REDACTED]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호주에서 진행되는 이 사건 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채권자 [REDACTED] 문카라, [REDACTED] 바부이, [REDACTED] 쾰은 국외에 거주하는 호주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상 환경권 내지 대한민국 민법상의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국가재정법 제100조는 공법상 권리에 관한 것이므로, 채권자들이 채무자들을 상대로 금융지원의 금지를 구하는 것은 당사자적격이 없거나 이를 다룰 정당한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신청에서 당사자적격은 자신에게 피보전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실제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심리를 거쳐 판단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법률상 당사자적격에 관한 특별한 제한이 없는 이상, 신청의 당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채권자들의 신청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채무자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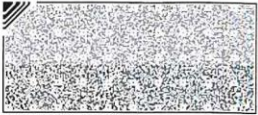
## 3. 신청이유에 관한 판단

### 가. 피보전권리

1) 헌법 제35조 제1항은 환경권을 기본권의 하나로 승인하고 있으므로, 사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이러한 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배려하여야 하나,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서의 환경권에 관한 위 규정만으로는 그 보호대상인 환경의 내용과 범위, 권리의 주체가 되는 권리자의 범위 등이 명확하지 못하여 이 규정이 개개의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구체적인 사법상의 권리를 부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사법적 권리인 환경권을 인정하면 그 상대방의 활동의 자유와 권리를 불가피하게 제약할 수밖에 없

※ 문서 좌측 상단의 바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홈페이지 및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변조 방지용 바코드입니다.



음성출력용바코드

다. 따라서 사법상의 권리로서 환경권이 인정되려면 그에 관한 명문의 법률 규정이 있거나 관계 법령의 규정 취지나 조리에 비추어 권리의 주체, 대상, 내용, 행사 방법이 구체적으로 정립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5. 5. 23.자 94마2218 결정 등 참조).

2) 그런데 채권자 [redacted] 문카라, [redacted] 바부이, [redacted] 켈이 피보전권리로 주장하는 깨끗한 공기를 호흡할 수 있는 권리 내지 환경이익은 이를 인정할 수 있는 명문의 법률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관계 법령의 규정 취지나 조리에 비추어 권리의 주체, 대상, 내용, 행사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외국인인 위 채권자들이 헌법상 환경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에 기하여 곧바로 이 사건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의 중단을 구할 피보전권리가 생긴다고 할 수는 없다.

3) 그리고 채권자 [redacted] 문카라, [redacted] 바부이, [redacted] 켈은 소유권 또는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 주장하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위 채권자들이 이 사건 사업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대상지역 안에 거주하고 있음을 소명하기 부족하다. 더구나 채무자들은 이 사건 사업의 주체가 아니고 이 사건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의사를 밝힌 상태에 불과하므로, 그 자체로 인하여 채권자 [redacted] 문카라, [redacted] 바부이, [redacted] 켈의 소유권 내지 환경이익이 직접적으로 침해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4) 나아가 국가재정법 제100조<sup>1)</sup>는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

1) 제100조(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①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을 집행하는 자, 재정지원을 받는 자, 각 중앙관서의 장(그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기금관리주체와 계약 그 밖의 거래를 하는 자가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국가에 손해를 가하였음이 명백한 때에는 누구든지 집행에 책임 있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에게 불법지출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문서 좌측 상단의 바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홈페이지 및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 그 시정을 요구하는 국민의 권리를 규정한 것인데, 채무자들은 현재까지 이 사건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실행한 바 없고 지원의사를 밝힌 것에 불과하므로 그 이후 지출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예산·기금의 불법지출과는 구별된다. 따라서 채권자들로서는 실제 이 사건 사업을 위한 금융지원 과정에서 위법한 행위로 국가에 손해가 가하여졌음이 명백한 때에 비로소 불법지출에 대한 증거제출 및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아직 지출행위도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에서 국가재정법 제100조를 근거로 어떠한 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가사 시정요구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채무자들이 국가재정법 제100조 제2항에서 규정한 처리결과 통지의무 외에 채권자들에 대하여 어떠한 사법상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 나. 보전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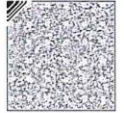
한편 보전처분은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의 존재에 관한 소명이 있어야 하고, 이 두 요건은 서로 별개의 독립된 요건이기 때문에 그 심리에 있어서도 상호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심리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07. 7. 26.자 2005마972 결정, 대법원 2005. 8. 19.자 2003마482 결정 참조),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채무자들의 이 사건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계획은 금융기관인 채무자들이 에스케이이엔에스와 무역보험 및 대출계약 등을 체결하는 일반적 금융제공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데, 이를 금지하더라도 에스케이이엔에스가 다른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점, ② 채무자들이 이 사건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하지 않아 에스케이이엔에스가 사업에서 제외되더라도 이미 자금집행이 승인된 일본 전력기업(JERA)을 비롯하여 호주 현지 석유가스 기업(Santos) 등이 다른 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시정요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문서 좌측 상단의 바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홈페이지 및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 변조 방지용 바코드입니다.



음성출력용바코드

가의 사업자를 끌어들여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는 점, ③ 나아가 향후 사업 추진에 위법성이 발견된다면 이 사건 사업 진행 단계에 따라 호주에서의 사법절차 등을 통하여 이를 다룰 기회가 남아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현 단계에서 채권자들이 제시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당장 채무자들의 금융지원을 금지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5. 20.

재판장

판사

송경근



판사

신일수



판사

신동용



※ 문서 좌측 상단의 바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홈페이지 및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변조 방지용 바코드입니다.



영상출력용바코드

**[별지1]**

에스케이이엔에스 주식회사의 호주 바로사(Barossa) 가스전 개발사업 투자의 자금공급을 위한 무역보험 체결 등 무역보험법 제53조 제1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다음의 행위

1. 무역보험(환율 변동과 이자율 변동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을 포함한다)
2. 수출신용보증 및 수출용 원자재 수입신용보증
3. 기금의 관리 및 운용
4.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관리
5. 제1항 내지 제4항에 부수하는 업무. 끝.

※ 문서 좌측 상단의 바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홈페이지 및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변조 방지용 바코드입니다.



음성출력용바코드

[별지2]

에스케이이엔에스 주식회사가 진행하는 호주 바로사(Barossa) 가스전 개발사업의 자금 공급을 위한 금융주선행위 및 한국수출입은행법 제28조 제2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행위

1.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에 대한 투자 및 보증
3. 채무의 보증
4. 정부, 한국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
5. 외국자본의 차입
6. 수출입금융채권과 그 밖의 증권 및 채무증서의 발행
7. 외국환 업무
8. 정부가 위탁하는 업무
9. 제1항 내지 제8항에 부수하는 업무. 끝.

※ 문서 좌측 상단의 바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홈페이지 및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변조 방지용 바코드입니다.



www.scourt.go.kr



음성출력용바코드

# 정본입니다.

2022.05.20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사무관 신호숙



※ 문서 좌측 상단의 바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홈페이지 및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